

도전과 공감, 으뜸문정!



2022 학부모 연수자료



2022. 3.



문정여자고등학교
MUNJEONG GIRLS' HIGH SCHOOL

목 차

1. 2022 학생 평가 교육	-----	1
2. 공교육 정상화법	-----	7
3. 청렴교육	-----	10
4. 교권보호교육	-----	23
5. 장애이해교육	-----	29
6. 가정 폭력 예방 교육	-----	31
7.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32
8. 학부모를 위한 청소년 생명 존중 교육	-----	33
9.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	36
10. 성폭력 예방 교육	-----	37
11. 흡연 예방 안내	-----	38
12. 미세먼지 대응 교육	-----	40
13.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안내	-----	42

1. 학생평가 기본원칙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에 기반하여 실시함.

나. 지필평가는 등교수업 시 실시. 수행평가는 학생이 직접 수행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라. 원격수업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칙(모든 과목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단,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를 해당 란에 입력

- 1)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 및 기재 가능(과목 제한 없음)
 -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한 토의·토론, 발표 등(유형Ⅰ), 학생이 제출한 수행 동영상(유형Ⅱ)으로 평가·기재 가능(*전 과목 가능)
- 2)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유형Ⅲ,Ⅳ) 등교수업에서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 가능
 - 원격수업에서의 학생 활동을 등교수업과 연계하여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평가·기재 가능

2. 학생평가 계획 【1학기에 한해 한시적】

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경우

- 1) 지필평가
 - 횟수 조정 : 과목의 특성 및 등교수업 시기에 따라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 횟수 조정 가능
- 2) 수행평가
 - (반영 비율) 중학교 25% 이상, 고등학교 15% 이상
 - 영역, 방법, 횟수 등 조정 가능
 - 수행평가 영역 1개 이상 가능
- 3) 서술·논술형 평가
 -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에서 20% 이상 반영

[예시] ① 지필평가 20% 반영 ② 지필평가 10%, 수행평가 10% 반영 ③ 수행평가 20% 반영

나.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 1) 지필평가 : 2회 실시
- 2) 수행평가 : 2개 영역 이상 실시
- 3) 서술·논술형평가
 -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에서 20% 이상 반영

3. 인정점 부여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규정에 따른다.

나.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결시 전의 해당 학기에서 시행한 평가 성적이 있는 경우 그 평가 성적을,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해당 학기에서 시행하는 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 평가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 시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text{결시 과목의 점수} = \text{기준 평가 득점} \times \frac{\text{결시 평가 전체 평균}}{\text{기준 평가 전체 평균}} \times \text{인정점 비율}$$

예 시

예) 1차 평가 득점 50점, 2차 평가 결시, 1차 평가 전체평균 50점,
2차 평가 전체평균 75점, 인정점 비율 80%일 경우 인정점 산출 공식

$$\text{2차 평가 점수} = \text{1차 평가 득점(50)} \times \frac{\text{2차 평가 전체 평균(75)}}{\text{1차 평가 전체 평균(50)}} \times \text{인정점 비율(0.8)} = 60$$

라. 인정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다음에 의거하여 인정점을 부여하고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하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마.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1.] [시행 2021.1.1.] [법률 제17689호, 2020.12.22., 타법 개정] 참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 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 학습, 「학교보건법」제8조(등교 중지)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일시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 보호 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 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슴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할 수 있음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최하점의 -1점)으로 부여하는 경우(미인정 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7)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바~아 호의 경우, 지필평가 기간에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해당 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본 조항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함

9)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5, 6항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10)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아.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자. 해당 학기에 기준 점수(지필평가)가 없는 경우의 인정점 부여 방법

1순위. 해당 학생의 해당 학기 동일 교과(군)의 지필평가 점수

(동일 교과군의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결시 평가와 평균이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고사로 삼는다. 1차 2차 지필평가의 기준고사 점수가 모두 있는 경우, 같은 시기의 평가 점수를 기준고사로 삼는다.)

2순위. 해당 학생의 이전 학기 동일 교과(군)의 지필평가 점수

동일 교과군의 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결시 평가와 평균이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고사로 삼는다. 1차 2차 지필평가 점수가 모두 있는 경우, 더 가까운 시기의 것-2차 지필평가- 중에서 기준고사를 정한다)

3순위. 해당 학생의, 해당 학기의 전 과목* 지필평가 평균 점수를 이용

*전 과목: 해당 학생이 해당 학기에 응시한 지필평가 과목 전체(결시 과목 제외)의 평균점수

차. 해당 학기 해당 과목에 취득한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20조 2항의 처리방법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 최저점을 부여

카.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결시한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은 지필평가 기간에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타. 생리통으로 결시한 경우

※ '진료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 한해 질병결석 처리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함.

파.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결시한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함.

4.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평가 계획 수립

1. (기본 원칙)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하고, 평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단,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한다.

2. (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 등교 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산출식)을 마련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한다.

3. (평가 운영 조정) 사전에 계획한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 일정, 지필평가 횟수,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의 조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실시한다.

가. 공정한 수행평가를 적정 시기에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적 산출 근거 자료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수립(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4. (결시생 성적처리)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가. 등교 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나. 감염병* 임상 증상으로 등교 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인정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 관리지침에 따름

5. 내신 성적 처리

가.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교과목		성취도
구분	과 목	
기초(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공통 과목, 일반 선택	A, B, C, D, E
탐구(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 제외), 일반 선택	
생활(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	일반 선택	
체육·예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A, B, C
기초, 탐구, 생활	진로 선택, 과학탐구실험	
교양(철학, 논리학 등)	전체 과목	P

1)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경우(5단계 평정)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2) 단위학교 분할점수를 사용하는 경우(5단계 평정)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분할점수 산출 프로그램(문항정보표 활용방법)을 사용하여 단위학교 분할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5단계 평정 과목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각 지필평가 실시 이전에 과목별 분할점수 결재를 득한 후 학생에게 공지한다. 학기말 성적 처리 완료 전 수행평가 점수를 포함한 학기말 분할점수를 산출하고 결재를 득한 후 나이스에 입력한다. 단, 3단계 평정 과목은 단위학교 분할점수 산출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다호의 표에 따라 고정분할점수를 사용한다.

3)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 실험, 보통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전문 교과 I 과학계열 교과(군)의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전문 교과 I 국제계열 교과(군)의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의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나. 등급별 학생 수 산정

- 1) 수강자 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 인원으로 함
- 2)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함

<예시 자료(수강자 수 178명인 경우)>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누적 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누적 인원	7.12	19.58	40.94	71.2	106.8	137.06	158.42	170.88	178
반올림값	7	20	41	71	107	137	158	171	178
등급 인원	7	13	21	30	36	30	21	13	7

(반올림함으로써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대칭구조를 만들 수 있음)

- 3)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I’(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은 ‘성취도(A-B-C-D-E 또는 A-B-C)’와 ‘석차등급(1~9등급)’을 병기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전문교과Ⅱ, Ⅲ은 성취도를 5단계(A-B-C-D-E)로 평정하며,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한다.

구 분			원점수/과목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 고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보 통 교 과	공통 과목		○	○	○	5단계	○	○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 미산출
	일반 선택 과목	기초/ 탐구/ 생활·교양	○	○	○	5단계	○	○	•교양 교과(군) 제외
		체육· 예술	-	-	-	3단계	-	-	•수강자수 입력하지 않음
	진로 선택 과목 ※기초/탐구/생활 ·교양/체육·예술		○	○	- ※ 성취도별 분포비율 입력	3단계	○	-	•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Ⅰ·Ⅱ’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삭제, ‘성취도별 분포비율’입력
	교양 교과(군)		-	-	-	P	-	P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Ⅰ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또는 ‘○’등급	•보통 교과 공통 과목 과학탐구실험, 진 로 선택 과목(진로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포함), 체육·예술 교과(군) 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 (공동 교육과정) 과목			○	○	○	교과(군)별 3단계 또는 5단계	○	-	•보통 교과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 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포함), 체육· 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 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

1. 법의 정확한 명칭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법명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임. 이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선행교육(교육과정을 앞서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유발행위(시험 등으로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것)’를 금지하는 것임

2. 제정 이유

-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 내 공정한 경쟁 및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저해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이라는 교육목적에 어긋남
-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 학교입시 및 대학별고사에서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 출제와 평가 금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도입
-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미이행 시 관련 교원 징계, 학교 및 대학 등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부과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광고·선전 금지

4. 법령에 따른 부적절 사례

구 분			부적절 사례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과정 편성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 제공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지필·수행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각종교내대회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평가

Q&A로 보는 공교육정상화법

<교육과정 편성 운영>

Q1: 한 과목이 여러 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내용을 미리 배울 수 있나요?

A1: 해당 학기의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가르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같은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학년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과목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상 2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Q2: 한 과목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을 배워도 되나요?

A2: 해당 과목의 해당 학기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넘어서 지도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그 과목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과목의 내용 일부를 언급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Ⅱ 과목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적분Ⅰ 과목의 내용이나 과학 과목의 내용 일부를 다시 한 번 지도하는 경우는 가능한 예입니다. 그러나 미적분Ⅰ 과목 시간에 미적분Ⅰ 과목의 진도를 마치고, 이어서 미적분Ⅱ 과목의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3: 한 학기 내에서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3: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교내 평가(지필, 수행평가)>

Q4: 교과진도 운영계획상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지필·수행평가에 출제되나요?

A4: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교과진도 운영계획상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여 6월에 학습하게 되어있는 내용을 4월에 지도하고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는 있으나, 교과진도 운영계획에서 2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진도 운영계획 수정 없이 1학기에 앞서서 지도하고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하는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되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Q5: 편성된 과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에 대하여 수행 평가를 실시하기도 되나요?

A5: 지도한 교과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Ⅰ 과목 수행평가로 화학Ⅱ 과목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는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됩니다.

<교내 대회>

Q6: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나요?

A6: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수학·과학 등의 경시대회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수학경시대회에서 2학년에 편성된 과목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 1학년 학생에게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됩니다.

<방과후 수업 운영>

Q7: 방과후 수업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7: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Q8: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 수업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8: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경제」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 수업 운영 계획으로 수립하여 절차를 거쳐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9: 학년말 동계방학 중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 시, 상위 학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나요?

A9: 방과후학교 과정이 학교 휴업일 중 편성 운영되는 경우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19년 3월 26일 개정내용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법률 제16300호(2019. 3.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1 왜 해야 하는가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표준 강의안

왜 해야 하는가
Step 1

청탁금지법 개념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
검사들의 부패비리사건이 연달아 발생

그러나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어나 무죄를 선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직면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탁금지법 현황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단위 : %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단위 : %



국민(87.7%) 공무원(96.6%)의 대다수가 법 시행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국민(91.2%) 공무원(93.8%)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음

출처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한국리서치 2019)

4

청탁금지법 필요성

부정청탁 금지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왜곡 방지,
직무수행의 공정성 강화

공무원

국민



금품등의 수수 금지

- 허용기준을 벗어난 금품수수금지
-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한도를 초과하는 대가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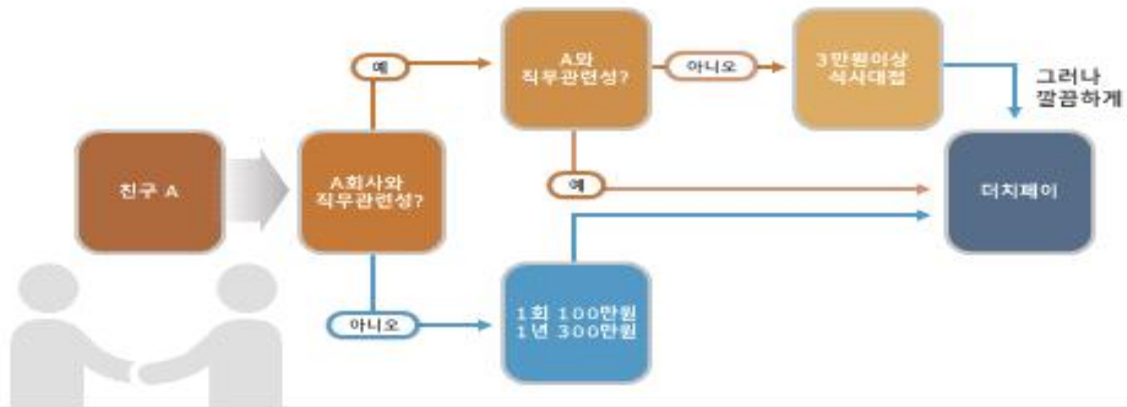
- 공직자 및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제공·약속·의사표시 금지

금품등의 이익으로 매수되는 것을 방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회복

인맥이 아닌 신뢰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 구현

5

일상생활 속 청렴으로의 의식전환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관행이 바뀌고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바뀐다

2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사례를 통해 본 청탁금지법의 이해 표준 강의를

청탁금지법 개념

개념

부정청탁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개념

적용 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경기도교육청 관련 적용대상 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경기도교육청 관련 적용대상 기관
공립유 초·중·고등학교, 방송통신중고,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및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학교 및 학교법인(단, 직원 근로 계약물
체결한 자는 적용 대상
임), 위임위원(용역 계약물 체결한 경우는 제외)

공직자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직무 위임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사·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 금지행위

개념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

1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2 행정처분·형법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련 직위선정·탈락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선정·탈락에 개입
6 임찰·경대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선정· 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에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관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10

부정청탁 사례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사례



OMR 답안지 마킹 실수로 재기회 청탁

A는 2017. 10. 17 본연의 아들인 B로부터 2017년 제2차 ○○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작성경사 중 OMR 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 C에게 본연의 아들이 OMR 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함

처리결과 : A 과태료 8,000,000원, B 과태료 3,000,000원
작용법령 : 「행위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항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

A는 B회사 건설사업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연의 아들인 C가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행과정에서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아들의 실무면접 전행과정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1월 본사 채용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아들 C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청탁

처리결과 : A 과태료 10,000,000원
작용법령 : 「행위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부정청탁 예외사유

개념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

부정청탁 예외사유 사례

사례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A군에 위치한 B학교는 당초 허가 받은 구역 이외의 토지에 학교 건물 공사를 시행하여 C교육청은 학교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음. 이 후 A군은 C교육청에 B학교가 관내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존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협조 공문을 '대국민공개로' 시행함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제청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제청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제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함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C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C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함

1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무·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매회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1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행사자됨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들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14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금품등의 종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 가지

1.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간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안·추천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5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개념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예외적 허용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수수금액의 2~5배)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16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금지

개념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제8 조 제4 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



제22 조 제1 항 제2 호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



17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개념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공직자 등 사례금 상한액 40 만원 일원화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종액한도
× 시간 초과시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60만원 초과 불가
× 각급학교 교직원, 연공사 임직원 등 시간당 100만원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의무화
(신고보완기간 5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 제한 가능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신고 및 반환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0.05.27.시행) '사전 신고 의무화' 가 '강의 마친 날로부터 10 일 이내 서면 신고'로 변경
'청탁금지법' 제 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일부 조항 개정

기준 : 사전신고의무(사전신고가 곤란할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부터 2 일 이내 서면신고)
변경 : 사후신고(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부터 10 일 이내 서면신고)

양벌규정

개념

-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음식물

사례



조합 법인카드로 식사비 결제

A는 자동차 관리사업자(자동차 정비업체, 매매업체)의 등록, 지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7년 7월 B시 소재의 식당에서 C 조합의 이사장, 임직원 및 조합원 총 21명과 함께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으며, C 조합의 이사장이 조합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였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60,000원

적용법령 : 『정당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



식사, 주류, 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은 행위

A는 공기업 팀장으로 협력사 C의 팀장 D는 A의 소개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한 바 있음. A는 D로부터 2017년 12월 식당에서 280,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이후 또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2,2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접대부 서비스를 대접받았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1,700,000원

적용법령 : 『정당금지법』 제8조제2항 및 제23조제2호, 제23조제5항

출처: 정당금지법 주요판례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2019)

20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선물

사례



병동회비로 명절선물 수수

A는 직무권한자인 C병원 중환자실 소속 직원들이 걷은 병동 회비로 명절선물 명목으로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을 2차례(2017년 추석, 2018년 설날)에 걸쳐 200,000원 상당 수수하였고, B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3차례(2017년 설날과 추석, 2018년 설날)에 걸쳐 300,000원 상당을 수수함.

처리결과 : A 과태료 400,000원, B 과태료 600,000원 부과

적용법령 : 『정당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1호



우산고로쇠물 제공

위반자 A는 ○○도 B여초계장이자 C 한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8년 3월 ○○○수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한 사람 당 1~2 박스씩 총 8박스의 우산고로쇠물, 시가 합계 400,000원(=1박스당 50,000원 × 8박스) 상당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800,000원

적용법령 : 『정당금지법』 제23조제5항 제3호, 제8조제5항

출처: 정당금지법 주요판례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2019)

21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현금

사례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 제공 중학교 교사 A는 학교 과학실에서 ○○교육지원청 장학사에게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2,00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공사 B지사의 토목직 공무원 A는 주식회사 C(B지사 관내의 포장공사를 불협으로 하도급 받음)의 이사 D로부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3,00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23조제5항제1호
	인허가 및 건축사 지도감독-골프접대 건축사무소 대표 A는 ○○군 도시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C(○○군 건축 인허가 및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담당)를 비롯하여 D, E와 함께 골프를 쳤. A는 C의 골프비용 130,000원을 부담하였음. 처리결과 : A 과태료 26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제8조제5항

출처: 청탁금지법 주요원래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2019)

22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외부강의

사례

	1 시간 40만원, 1회 60만원 초과 A는 외부강의의 사례금으로 1회당 60만원씩 29회에 걸쳐 1,740만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 처리결과 : 과태료 3,00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3조
	사전신고 및 반환하지 않음 B는 외부강의를 하면서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았음. 처리결과 : 과태료 40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 제10조제5항
	공직유관단체 상한액 초과 수수 ○○공사 공직자인 C는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14차례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반환하지도 않았음.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0원 처용법령 :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0조

출처: 청탁금지법 주요원래집 2019 (국민권익위원회, 2019)

23

- 외부강의 관련(사전신고 관련) 변경내용
- 기존 : 사전신고 의무 ⇒ 변경 : 사후신고(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청탁금지법 제10조 내용 참고]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甲 국립대학교 교수 A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1년 동안 대기업에 사외이사로 참여하면서 수당과 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참석하여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甲의 결혼식에 초등학교 통창회장 A가 참석하여 통창회 회칙에 따라 150만원의 경조사비를 낸 경우

둘러 보기 위한 성립법령정보 (<http://www.seylw.go.kr/CSF/Csp/CpMenu.do?popMenu=ov&srSeq=911&srNo=25&coNo=25&cpQNo=3>)

24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경찰 공제회가 재직 중인 공상 경찰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가 신규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A가 참석하여 6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받았는데, 그 태블릿 PC가 참석한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된 경우



사립대학교 교수 A가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 점을 방문하였는데, 甲 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최신 텔레비전에 당첨되어 수령한 경우

둘러 보기 위한 성립법령정보 (<http://www.seylw.go.kr/CSF/Csp/CpMenu.do?popMenu=ov&srSeq=911&srNo=25&coNo=25&cpQNo=3>)

25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 사례

사례

	대기업 직원 B는 대기업의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사무관 A와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인데, 대기업 직원 B가 여자 친구인 사무관 A의 생일에 1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준 경우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 받는 경우
	항공사가 이코노미 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들의 좌석이 비즈니스 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출처: 찾기 쉬운 성직법령정보 (<http://www.sejkw.go.kr/CSF/CpfOfMinJrf?popMenu=ov&srSeq=911&srNo=25&srNo=25&srOfNo=3>)

26

출처: 경기도교육청-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남부청사-2020년 청렴교육 표준강의안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약칭 교원지위법)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보호·침해’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 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 15조 제1항)

1. 폭행, 상해(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먹살을 잡고 흔든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 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으로 6주간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2. 협박(교원지위법제15조 제1항 제1호)

- ①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교폭력 은폐사실을 알려 피해 교원을 징계받게 하겠다라고 말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피해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

3. 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①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교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4. 모욕(교원지위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① 공연히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신체적 특징을 지칭하며 경멸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수업태도를 바로 하라는 교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려 보인 경우

5. 손괴(교원지위법 제 15조 제1항 제1호)

-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 출석부, 교사의 업무수첩 등을 뜯어내어 훼손하거나 감추는 경우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성범죄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교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7.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① · 비방의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8.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공무집행방해 :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9. 성희롱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수업시간 중 교사에게 ” 가슴이 없어서 등 인줄 알았어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
- 성적인 물건(피임용품)이나 야한 사진을 교사가 볼 수 있도록 교탁 위에 놓거나 교사의 동선상에 떨어뜨려 놓는 경우

1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①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기’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 간섭하는 경우

1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①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교권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
로 학교장이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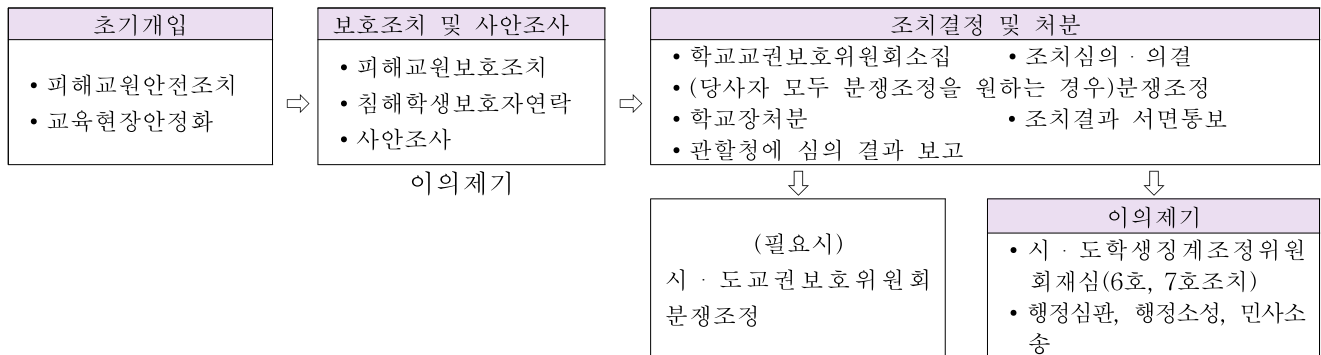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정교원지위법 이전	개정교원지위법 이후(2019.10.17.)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① 학교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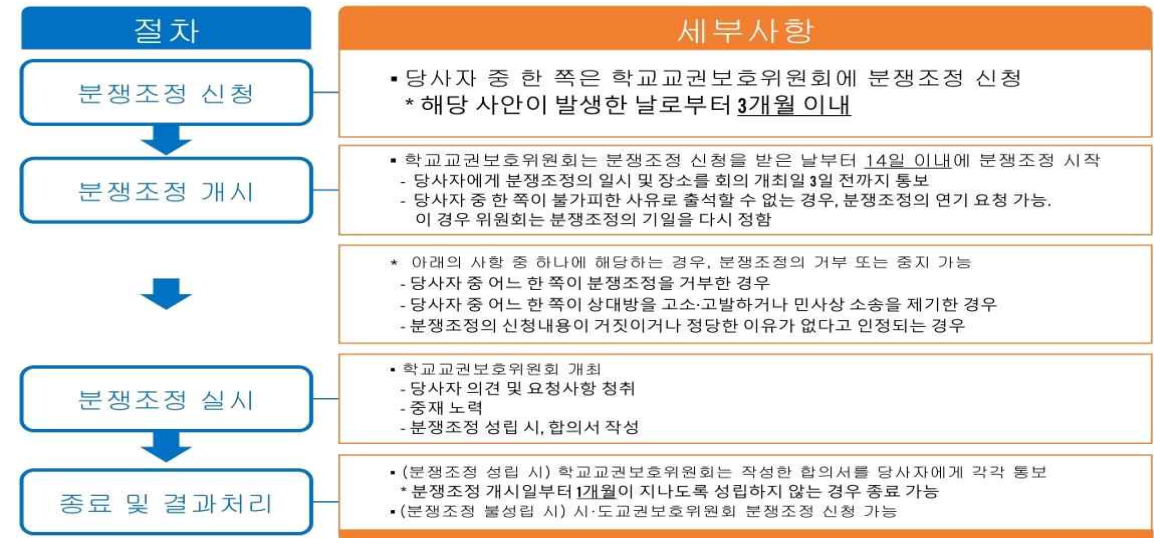
2.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 고소, 고발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통지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안처리 절차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안되는 이유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학생들의 인성에 위협

-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

◆ 학교교육환경 이해하기

1. 학교의 업무상황

가. 교육활동

교사들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직무, 자격, 자율연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 전문성 개발

학교에는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학술제, 학생교류, 대피훈련 등

다. 학교행사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성적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고, 수업·평가·기록이 일원화 되어 업무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라. 교무행정업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준비에 여념이 없어야 하지만 행정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업무영역확대

-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 교육환경으로 변화
- 다문화 학생 증가 및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 배려 필요
- 학생의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위해 급식, 영양, 상담 등 중요
- 미세먼지 증가, 각종 전염병 등으로 학생 보건교육 필요

다. 학생 특성 이해 및 생활지도 업무의 어려움

- 타인 배려 부족, 폭력적인 학생들, 생활지도 거부, 학업중단 학생 증가
- 사이버 폭력, 입시교육, 자해증가, ADHD, 사회성 부족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으로 개별적인 교육은 쉽지 않고, 부족한 타인 배려와 폭력적인 환경에서 학생의 비행은 점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교사의 역할은 여러 이유로 막혀 있어 아쉽습니다.

◆ 학부모의 교육활동

1.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학교알리미 활용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 학부모회 참여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 공개수업 참여

2. 학부모의 학교방문 절차

- 사전에 방문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또는 배움터지킴이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 방문증을 패용하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 가정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기 및 교원과 학부모의 관계 재정립하기

- 가정교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학교교육도 위험해짐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함
- 가정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필요함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 : 서로 존중하고 윈윈(win-win)하는 상관관계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 :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
→ 학생의 학습의 보장권 보장,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짐
- 교원과 학부모: 자녀(학생)을 키우는 새로운 부부와 같음
- 교원과 학부모의 역할의 연대 중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URL과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과 선생님의 사진 및 활동내용 등을
캡처하여 유출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받거나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노고와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5

장애 이해 교육

- 교무기획부(특수교육)

1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교육의 유형으로는 일반학급에서 완전히 통합되어 공부하는 완전 통합, 일부 교과를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부분 통합으로 나누어집니다.

2 본교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학년	장애유형		계(명)
	지적장애(부분통합)	정서행동장애(완전통합)	
1	2	·	2
2	·	·	·
3	2	·	2
합계	4	·	4

3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급에 설치된 학급

장애인 복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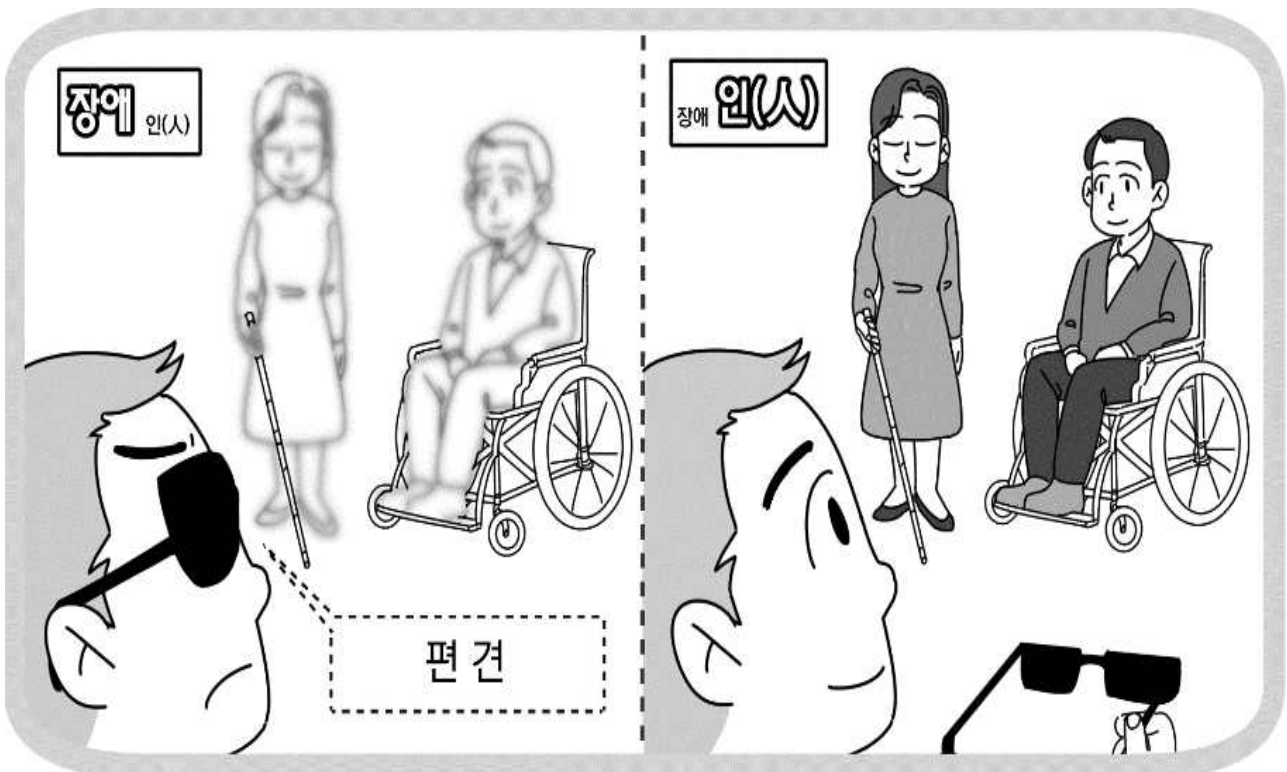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에 대해 생각해보기

같은 풍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바라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편견의 눈을 벗어나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10가지 지침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화 조절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대화 나누기)

둘째,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셋째,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고 칭찬 한마디의 기적을 만듭시다.

넷째, 남이 폭력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다섯째,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여섯째,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인 경우 바로 112에 신고합시다.

누구나 폭력 상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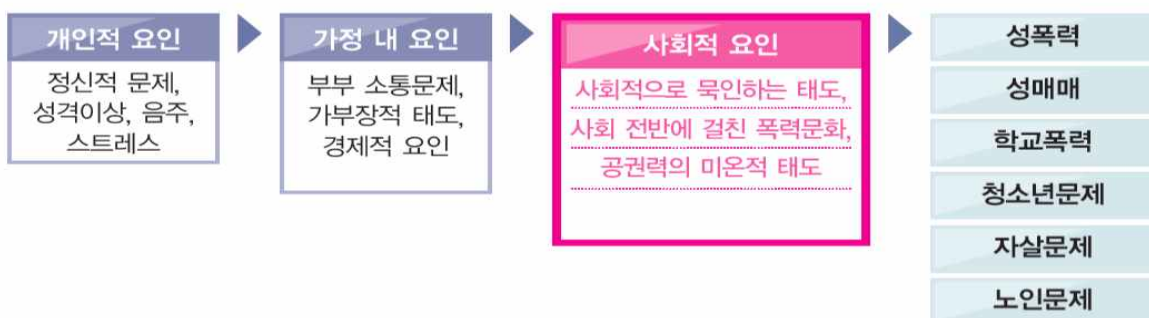
일곱째,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여덟째,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줍시다.

아홉째,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열째,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3. 가정폭력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 가정폭력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4. 가정폭력 발생시 이렇게!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 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개념

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법**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세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소통의 대상입니다

고치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이해하고
소통해주세요

사례 1

**“아이가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잔소리를 했어요”**

A. “간단히,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팩트만 짧고 간결하게
과거사를 들추는 등 감정적 대응은 금물!
왜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사례 2

**“집에서 너무 뛰다니길래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등짝스매싱을 날렸어요”**

A. “3초간 심호흡을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아이의 행동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주세요.

사례 3

**“너무 답답해서 혼자 집 앞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A. “아이를 절대! 혼자두지 마세요.”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예상하지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명의 보호자는 아이의 곁에서
머물러주세요.

장기간 아이를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세요

아동권리보장원 이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CLICK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1.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급변하는 사회 변동으로 인하여 쉽게 외부환경이나 자극에 대해 동요하고 그로 인한 우울증, 무력감, 자아혼란 등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46명씩 자살로 죽어가고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자살 선진국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잇따른 학생들의 자살이 **모방 자살**을 일컫는 ‘**베르테르 효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자살 당사자의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까지 이러한 어려움이 파급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2.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발생 요인

청소년기는 내적, 외적으로 변화가 많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시기이며 청소년 자살은 개별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기 보다는 보통 개인, 가족, 학교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의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청소년 자살의 징후

- ✓ 자살 위협 - 많은 청소년들은 자살계획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알림.
- ✓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

음식	잘 먹는 사람이 안 먹거나, 안 먹던 사람이 폭식을 하는 경우 갑작스런 체중 변화
수면	잠이 너무 늘어서 하루 종일 잠을 자려고 하거나, 혹은 잠을 못자고 서성이며 아무 이유 없이 잠자리에 들지 않는 경우
학업	학교에 잘 다니던 아이가 결석을 하거나 낙제를 하는 경우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외모	자기 외모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지저분하게 다니고 그것도 자각 못하는 경우
활동	좋아하던 일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는 경우
고립	또래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이나 자기 방에 혼자 있으려는 경우

- ✓ 소중한 대상의 상실 - 부모·형제·친한 친구를 잃은 경우, 이별, 부모의 이혼·별거 등.
- ✓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 주변을 정리하는 것 - 자신의 서랍이나 방을 정리하고, 빌렸던 물건을 돌려주는 등 이유 없이 신변을 정리하는 것.

<자살 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들>

행동신호들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언어신호들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나 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 멀리 떠나고 싶다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 사라져 줄게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기타신호들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감정기복이 심해짐

4. 청소년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 예방 지도

- 자살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적 이해와 관심이다.
- 생명의 소중함과 인생의 목표에 대한 긍정적 대화를 주기적으로 실행한다.
- 자녀의 이상 행동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청소년 시기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대화 시간을 많이 갖는다.
- 자살의 징후가 보일 때 전문 기관을 활용하고 자녀에 대한 친근감 형성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녀의 사소한 징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자살위기 및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광주자살예방센터 (365일 24시간)	062-600-1900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Wee센터	062-605-5700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센터	062-267-4800
경찰서	112

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1.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은 친구
2. 평소와 다른 기분변화나 행동 변화를 보이는 친구
3. 평소와 다른 식사태도와 수면상태의 변화를 보이는 친구
4.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에너지가 떨어져 처져있는 친구
5. 수면제, 진통제, 감기약 등 알지 못하는 많은 약물을 모아서 감추어 둔 친구
6. 칼, 줄 등 공구를 준비하여 감추어 둔 친구
7. 의미가 있는 개인 물품을 남에게 주거나 태워 버리는 행위를 하는 친구
8. 일기장, 노트, 메모장에 글, 그림, 낙서로 죽음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친구
9.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말을 흘리는 친구

※ 소중한 자녀들이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동영상 자료

- | | |
|-------------|---|
| ■ 가정폭력예방 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Ljz-9raemd8 |
| ■ 아동학대예방 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0Y1YyK47Xfc |
| ■ 생명존중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e13kecrCUbM
https://www.youtube.com/watch?v=qvTLySPvixw
https://www.youtube.com/watch?v=GXGvOq3O80Y |
| ■ 학교폭력예방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SIQHYYekQTBc |
| ■ 안전사고예방교육 | https://www.youtube.com/watch?v=WOhYsHBXysI |

◎ 자녀를 지키는 노하우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에서 발생하지만,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히 올바른 가정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 신학기일수록 자녀가 잘 씻도록 지도해주시고, 의복은 깔끔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세요.
-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친구를 비방하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주세요.
- 자녀가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OO 오늘 좋은데~” 등의 칭찬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주세요.

◎ 학교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스마트폰, 노트북)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 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기 주장을 미리 연습시켜주세요.
- 피해를 당한 것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상증세가 보이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지속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 학교폭력 예방 수칙

- 자녀의 사이버상 프로필과 심경변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 나눕니다.
- 자녀의 등·하교 길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행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 자녀에게 양육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 아동기·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가지도록 북돋워줍니다.

- 문화예술체육부(보건)

1)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향

- 가. 차이에 대해 알려 줍니다.(사춘기는 10년-시작점은 다르나 골인 지점은 비슷)
- 나. 남녀간의 예의를 갖추게 합니다.
- 다. 성폭행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라. 밝은 마음으로 몸을 사랑하게 합니다.

2) 성폭력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적인 것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 성적인 내용의 말과 행동으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경우
-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생식기 등 중요부위를 만지는 경우 (친구끼리 생식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장난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음란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가족과 함께 배우는 성폭력 예방수칙

- 자녀가 이성교제를 할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의 한계를 분명히 해둡니다.
-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귀가 후 스마트폰 사용은 제한합니다.
- 채팅을 통한 만남은 자제하도록 교육합니다.
-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휴대전화 단축 번호 '0'번에 112를 입력하여 긴급발생시 활용하고, 호신용 호루라기, 휴대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고 다니게 합니다.
- 버스, 공공장소 등에서 가볍더라도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신고해야 함을 교육합니다.
- 평소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고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합니다.

4) 피해를 입은 경우는!

- 심리적인 안정 : 자녀의 책임이 아님을 알리고 안심시킨다.
- 즉각적으로 신고한다.
- 2차 피해 예방 : 전문기관에 상담을 통해 적극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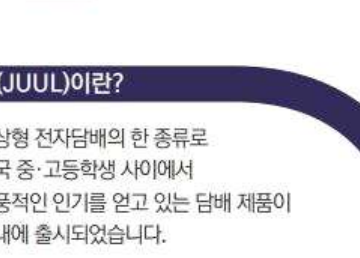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전문기관(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의료지원, 심리상담,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
-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전화: (☎ 02-338-5801~2)
-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서 (국번없이 117)
- ▶ 광주 해바라기센터 전화: (☎ 062-225-3117)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줄(JUUL)이란?

액상형 전자담배의 한 종류로 미국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담배 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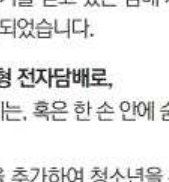
- USB 모양을 가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로,
- 사프실통크기로 한 손에 잡히는, 혹은 한 손 안에 숨길 수 있는 작은 크기가 특징입니다.
- 망고, 민트 등 여러 가지 맛을 추가하여 청소년을 유혹합니다.

담배가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 줄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 담배제품에는 다량의 니코틴이 들어있으며 이는 성장기 두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코틴이 뇌에 미치는 영향

- 줄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은 니코틴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 또한 청소년 시절 니코틴 사용은 다른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 줄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향후 청소년들이 일반 담배를 사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는 청소년들이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것들을 오히려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니코틴은 25세까지 발달하는 청소년의 두뇌 발달을 저해하는데 특히 집중, 감정, 공부, 충동조절 영역에 해를 끼쳐 건강한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 뇌가 발달한다는 것은 뇌 안의 신경세포들 간의 기능적 연결(시냅스, Synapses)의 발달을 의미하는데 니코틴이 시냅스 형태를 변화시켜 뇌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합니다.



팟(액상카트리지)
맛에 따라 색상이 다름



줄을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



컴퓨터를 이용해 충전가능
(이럴 경우 마치 USB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출처: https://www.cdc.gov/tobacco/basic_information/e-cigarettes/Quick-Facts-on-the-Risks-of-E-cigarettes-for-Kids-Teens-and-Young-Adults.html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세요”

“줄 등 신종담배는 일반 담배를
대신하는 안전한 제품이야”

“줄 등 신종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아.
다양한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특히 상당량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어”

“니코틴 그게 뭐 어때서요?”

“니코틴이 뇌에 전달되면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야. 특히 뇌회처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두뇌발달을 방해하지”

“그냥 향이 좋아서 한건데...”

“중독물질을 숨기기 위해 맛과 향을 좋게 한거야.
청소년이 사용하면 두뇌발달을 방해해”



부모님

- 줄(JUUL)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기
- 아이들과 함께 담배 사용의 해악에 대해 같이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교육



(왼쪽부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줄 유사
담배제품인 KT&G의 랠 베이퍼, 일본 조조
*이미지 출처 : [http://www.sporbiz.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39040](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40)

선생님



- 줄(JUUL)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기
- 담배 없는 학교를 위한 환경 정비 및 학교 내 흡연 행위 감시 강화
- 담배업계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거절하기
-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흡연예방 교육은 청소년 흡연예방에 효과가 전혀 없음
- 신종 담배에 대해 최신 정보를 확보하여 노력과 관심 기울이기

보건의료 전문가

- 환자 면담 시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스크리닝을 통해(어떤 유형의
전자담배인지 확인)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함으로써 금연을 유도
- 모든 형태의 담배 제품 사용의 유해성에 대해 환자에게 알리기
- 제품간 이동 혹은 대체재 선택이 아닌 금연이 정당임을 독려하기



*출처 : https://www.cdc.gov/tobacco/basic_information/e-cigarettes/factsheet/index.html
<https://www.flavorshookids.org/>

□ 미세먼지 및 위해성

○ 미세먼지 (PM₁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분진 중 직경이 10μm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초미세먼지(PM_{2.5})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μm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 위해성 체내에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 5~10μm :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2~5μm : 코 : 알레르기성 비염 1~2μm :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0.1~1μm : 폐 : 폐포 손상 유발
--	--

□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μg/m³)				주의보	PM 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 2시간 지속 PM 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³ 이상 2시간 지속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PM10	0~30	31~80	81~150	151이상	경보	PM ₁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μg/m³ 이상 2시간 지속 PM 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μg/m³ 이상 2시간 지속
	PM2.5	0~15	16~35	36~75	76이상		
▶ 2018.3.27. 초미세먼지 기준강화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확인방법 :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및 지자체별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계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절차** :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진단서나 소견서에 미세먼지와 연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 **요건**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2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 한 경우

□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_{10} 150이상 또는 $PM_{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이상시)
<경보> PM_{10} 300이상 또는 $PM_{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운동회 등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후 조정 •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공기정화장치 가동(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이상시)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 장시간 실외활동 및 외출 자제

- 대기오염이 높은 시간, 장소 피하기 (출·퇴근시간, 도로·공장 등)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활동량이 커지면 호흡률이 증가하여 미세먼지 흡입이 증가하므로 외출시에는 활동량 줄이기

■ 학생 개인 마스크 상시 소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착용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 방법>



■ 외출 후 손, 얼굴 깨끗이 씻기

- 외출 후 미세먼지가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발, 얼굴을 깨끗이 씻기
- 병원균을 제거하여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 수분, 과일, 채소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노폐물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는 물을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을 충분히 먹기 (과일, 채소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섭취)

■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 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 교체)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1.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2023학년도 대입전형은 2018년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과 2019년에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데, 2022학년도 대입전형과 비교해 볼 때 변화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 특징은, ① 2022 대입전형 기조 유지, ② 전체 모집인원 증가 및 시기별 모집인원 변화, ③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추세, ④ 논술시행 대학 증가 및 논술 영향력 증가 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2022 대입전형 기조 유지

2023학년도 대입전형은 전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던 2022 대입전형의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편된 수능 제도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간소화 방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1) 문·이과 통합형 수능

2022학년도부터 개편되어 실시되는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이 ‘공통+선택형’ 구조로 시행되며, 사회/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고,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과목(영역)		출제범위
국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Ⅰ, 영어Ⅱ(절대평가)
한국사		한국사(절대평가)
탐구	일반계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Ⅰ·Ⅱ)
	직업계	전문공동(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6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 택1(절대평가)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또한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활용하여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다소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해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활용한다. 이 조정점수로 인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text{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frac{[\text{선택과목 점수}]}{\text{원점수} - \text{평균}} \times \frac{(\text{선택집단})}{\text{공통과목 표준편차}} + \frac{(\text{선택집단})}{\text{공통과목 평균}}$$

2)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간소화 및 제출서류 축소

2020학년도 대입부터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 내용이 간소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가 축소되었다. 학생부 기록 간소화는 이미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2023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비교표

구분		2022~2023 대입	2024 대입
①교과 활동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종합의견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③비교과 영역	자율활동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활동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연간 500자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700자 •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평가를 위해 대학에 제공하지는 않음

또한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자료 중 하나였던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는데, 지난해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이 앞당겨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추가로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이 폐지하였다. 수도권 이외의 대학 대부분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중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하였다

3)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규모 유지

2022학년도에 모집인원(정원내) 10% 이상 선발을 권장사항으로 신설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은 2023학년도에도 유지된다. 이 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중심으로 전형을 시행하여 자소서 준비 등의 부담을 갖는 수험생들이 대거 지원하면서 전년도 학생부교과전형보다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승하였는데, 2022학년도에는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29.2% 증가하였는데, 지원 인원은 118.3%가 증가하여 경쟁률이 6.9:1에서 11.6:1로 상승하였다.

수도권 소재 71개 대학중 지역균형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56.3%에 해당하는 40개 대학인데,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평가에 교과 등급 환산점수 이외에 학생부 정성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대학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 지역균형선발전형 실시 대학 현황

(단위: 개교)

구분	전형 방법			수능 최저학력기준		추천인원 제한		소계
	학생부100	학생부+면접	학생부+서류	적용	미적용	제한	미제한	
서울	16	4	6	23	9	16	10	26
인천	2		1	2	2	1	2	3
경기	9	2		11	6	2	9	11
계	27	6	7	36	17	18	22	40 ⁷⁾

수도권에서 지역균형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실시하는 서울대와 경인교대를 제외한 38개 대학 중 서류평가를 포함하는 대학은 건국대 등 5개 대학이 있다. 지난해에는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만 실시하다가 2023학년도에는 건국대와 경희대가 추가로 서류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 전형 방법에 따른 학생부교과 중심의 지역균형전형 선발대학 분류

전형 방법	대학	대학 수(개)	비율(%)
교과 100	한양대 등 대부분 대학	25	65.8
교과+서류평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5	13.2
교과+면접	가천대, 서울교대, 연세대, 이화여대	4	10.5
교과90+출결10	서강대, 중앙대, 성신여대, 경기대	4	10.5
계		38	100

나. 전체 모집인원 증가 및 시기별 모집인원 변화

2023학년도 대학별 선발인원은 전년도보다 2,571명이 증가한 349,124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미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학과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일부 대학의 첨단학과 선발인원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 이월 인원을 반영한 결과이다. 전국 197개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349,124명)의 78.0%, 정시모집에서는 22.0%를 선발하는데,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역대급으로 높다. 그러나 권역별로 구분해보면 지역에 따라 수시, 정시모집 선발인원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다.

㉢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 비율 비교

단위 : %

범주별	수시					정시			합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 등	소계	수능	기타	소계	
전국	44.7	23.7	3.2	6.1	77.8	20.3	2.0	22.2	100
서울 15개 대	11.2	34.5	8.6	3.7	57.9	40.2	1.8	42.1	100
수도권	27.8	27.1	6.1	7.1	68.0	28.9	3.0	32.0	100
지역거점국립대	40.2	25.8	2.4	2.8	71.2	27.8	1.0	28.8	100
비수도권	62.7	18.8	0.6	7.1	89.1	9.2	1.7	10.9	100

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추세

2023학년도에는 일부 대학이기는 하지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소 완화한 대학들이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자 풀의 감소와 상위 등급을 받는 수험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들로 추정된다.

1) 학생부교과전형

서울 지역에서는 고려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서울여대가,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가톨릭대, 아주대가, 지역거점국립대 중에서는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대부분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1개 등급 정도씩 다소 완화하였다. 반면에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등은 전년도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소 강화하였다. 건국대 KU지역균형 전형은 2022학년도에 2개 영역 합 5등급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23학년도에는 폐지하였다.

☞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현황

* 참고 : '/' 전후는 '인문/자연' 의미임

지역별	대학명	전형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의약학 계열
서울	건국대	KU지역균형	폐지	2개 합 5	
	경희대	지역균형	2개 합 5	2개 합 5	의치한약 3개 합 4
	고려대	학교추천	3개 합 6/7	3개 합 5/6	의과 4개 합 5
	광운대	지역균형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	2개 합 5/6	2개 합 5/6	
	덕성여대	학생부100% 고교추천	2개 합 7	2개 합 7	약학 3개 합 6

지역별	대학명	전형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의약학 계열
서울	동국대	학교장추천인재			
	동덕여대	학생부교과우수자	2개 합 7	2개 합 7	약학 2개 합 4
	상명대	고교추천	2개 합 7	2개 합 7	
	서울과기대	고교추천	2개 합 7	2개 합 6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3개 합 7	3개 합 7	
	서울여대	교과우수자	2개 합 7	2개 합 7 (영 포함시 2개 합 5)	
	서강대	교과장추천	3개 합 6	3개 3등급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3개 합 6 (글로벌경영 등 3개 합 5)	2개 합 5(영3)	
	성신여대	지역균형	2개 합 6/7	2개 합 6/7	
	세종대	지역균형	2개 합 6/7	2개 합 5/6	
	숙명여대	지역균형선발	2개 합 5	2개 합 5	약학 3개 합 6
	숭실대	학생부우수자	2개 합 4/5(영 포함)	2개 합 6/7(영 제외)	
	연세대	추천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중앙대	지역균형선발	3개 합 7	3개 합 7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2개 합 4 (글캠 1개 3등급)	2개 합 4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홍익대	학교장추천	3개 합 7/8	3개 합 7/8	

지역별	대학명	전형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의약학 계열
	전남대(광주)	일반	2개 합 6~8 (경영,경제 3개 합 9)	3개 합 8~12	의예 3개 합 4 치의 3개 합 5 약,수 3개 합 6
	전북대	일반학생	2개 합 6~10	3개 합 7~14	의예 4개 합 5 치의 3개 합 5 약,수 3개 합 7
인천/ 경기	가천대	학생부우수자	2개 합 6	2개 합 6	
		지역균형			의예 3개 1등급 약학 3개 합 5
	가톨릭대	지역균형	2개 합 7	2개 합 6	의예 3개 합 5 약학 4개 합 5
	경기대	교과성적우수자	2개 합 7	2개 합 7	
		학교장추천	2개 합 7	2개 합 7	
	단국대(죽전)	지역균형선발	2개 합 6	2개 합 6	
	명지대	교과면접			
		학교장추천			
	인하대	지역균형	2개 합 5	2개 합 5	의예 3개 1등급
	인천대	교과성적우수자	2개 합 7(사범 5~6)	2개 합 7(사범 5~6)	
		지역균형			
	아주대	교과추천	2개 합 5	2개 합 4	
	한국항공대	교과성적우수자	2개 합 5~6	2개 합 5~6	
지역거점 국립대	한양대(에리카)	지역균형선발	2개 합 6	2개 합 6	약학 3개 합 5
	강원대	일반	3개 합 9~14	3개 합 8~13	의예 3개 합 5 치,약 3개 합 7
	충남대	일반	3개 합 8~12	3개 합 8~12	의예 3개 합 4 약학 3개 합 5 수의 3개 합 6
	충북대	학생부교과	3개 합 9~12	3개 합 9~12	의예 3개 합 4 약,수 3개 합 7
	경북대(대구)	일반학생	2개 합 5~6	3개 합 7~9	치의 3개 합 3(탐 포함) 약,수 3개 합 5(탐 포함)
	부산대	학생부교과	2개 합 4~6 (경영 3개 합 6)	3개 합 6~7/ 2개 합 5~6 (경영 3개 합 6)	한의 3개 합 4

2)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한 대학이 많지 않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자연), 충남대 PRISM인재(사범대,간호), 경북대 일반학생 전형 등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설정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다소나마 완화하였고, 2022학년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신설했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년 만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다.

3) 논술전형

논술전형에서는 이화여대(자연), 세종대, 서울여대, 경북대, 부산대 등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소 완화하였고, 성균관대, 숭실대 등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다소 강화하였다. 특히 부산대와 경북대는 3개 영역 합 7등급 정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개 영역 합 4~5등급으로 크게 완화하였다.

㉠ 논술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현황

지역별	대학명	전형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의학학계열
서울	건국대	논술우수자	2개 합 4/5	2개 합 4/5	
	경희대	논술우수자	2개 합 5	2개 합 5	의치한약 3개 합 4
	덕성여대	논술	2개 합 7	2개 합 7	
	동국대	논술우수자	2개 합 4/5	2개 합 4/5	약학 3개 합 4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국수영 중 1개 3등급	2개 합 7	
	서강대	논술	3개 합 6	3개 합 6	
	성균관대	논술우수	3개 합 6 (공경,소프트웨어 등 3개 합 5)	2개 합 4(공경,글바예 등 2개 합 3)	약학 3개 합 5 의예 4개 합 5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2개 합 6/7	2개 합 6/7	
	세종대	논술우수자	2개 합 5/6	2개 합 4/5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2개 합 5	2개 합 5	
	송남대	논술위주	2개 합 4/5(영문합)	2개 합 6/7(영제외)	
	이화여대	일반	3개 합 6/2개 합 5 (스크린온 3개 합 5)	3개 합 6	
	중앙대	논술	3개 합 6	3개 합 6	의학·약학 4개 합 5
	한국외대	논술	2개 합 4(LD,LT 2개 합 3)	2개 합 4(LD,LT 2개 합 3)	
	홍익대	논술	3개 합 7/8	3개 합 7/8	
인천/경기	가천대	논술	1개 3등급	1개 3등급	
	가톨릭대	논술	3개 합 6(간호)	3개 합 6(간호)	의예 3개 합 4 약학 3개 합 5
	인하대	논술			의예 3개 1등급
	이주대	논술우수자			의학 4개 합 6
	한국항공대	논술우수자	2개 합 5-6	2개 합 5-6	
지역 거점 국립대	경북대(대구)	AAT	2개 합 5	3개 합 7-8	의치 3개 합 3 수의 3개 합 5
	부산대	논술	2개 합 4-5 (경영 3개 합 6)	3개 합 7/2개 합 5 (경영 3개 합 6)	

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지방대학의 의과대, 치과대, 한의과대, 약학대, 간호대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는데, 의과대, 치과대, 한의과대, 약학대는 기존 30%(강원, 제주 15%) 권고에서, 40%(강원, 제주 20%)로 상향돼 의무선발을 하게 되고, 간호대는 기존과 같이 30%(강원, 제주 15%) 의무선발을 한다). 이러한 조치는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입시환경에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해된다.

마. 기타 - 서울대 전형 방법 변경

2023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는 전형 방법을 크게 변경하였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이 아닌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유사한 방식의 학생부 교과 평가를 반영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현황

지역별	대학	전형명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3 의약학계열
서울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패지	2개 합 5	
	고려대	학업우수형	4개 합 7/8	4개 합 7/8	의과 4개 합 5
	서울대	지역균형	3개 합 7	3개 3등급	
	연세대	활동우수형	2개 합 4/5(영3)	2개 합 4/5(영3)	의,치,약 2개 1등급(영3)
		국제형-국내고	2개 합 5(영1)	2개 합 5(영1)	
	이화여대	미래인재	3개 합 6/2개 합 5	3개 합 6	약학,의예 4개 합 5
	홍익대	학교생활우수자	3개 합 7/8	3개 합 7/8	
수도권 총상위	아주대	아주ACE			의예 4개 합 6 약학 4개 합 7
지역 거점 국립대	충남대	PRISM인재(300)	3개 합 9-12(사범), 12(간호)	3개 합 9-10(사범), 12(간호)	의예 3개 합 5 약학 3개 합 6 수의 3개 합 7
	충북대	학생부종합II	3개 합 13(간호11)	3개 합 13 (간호11)	의예 3개 합 5 약,수 3개 합 8
	경북대(대구)	일반학생	2개 합 6-7	3개 합 8-10	의,치 3개 합 3(탈 포함) 약,수 3개 합 5(탈 포함)
	부산대	학생부종합	2개 합 5-6	2개 합 5-6	
	전남대(광주)	고교생활우수자			의예 3개 합 5 치의 3개 합 6 약,수 3개 합 7
	전북대	큰사람			의예 4개 합 6 치의 3개 합 5 약,수 3개 합 7

1) 수시모집에서 지난해까지 ‘서류 70%+면접 30%’였던 지역균형선발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1단계에서 서류100%로 3배수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70%+면접 30%’로 변경한다. 또한 정시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적용해 기존 일반전형을 1단계에서 수능 100%로 2배수 선발한 이후 2단계에서 ‘1단계 80%+교과평가 20%’로 뽑는다. 또 정시에도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해 ‘수능 60%+교과평가 4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2) 교과 평가

-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① 교과 이수 현황, ② 교과 학업성적, ③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만 반영하여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 평가 항목

① 과목 이수 내용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 교과(목)별 위계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과목 이수 내용 [예시] 공과대학 평가 : 수학,과학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예시] 경제학부 평가 : 수학,사회 교과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교과(목) 이수 현황

② 교과 성취도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 기초 교과 영역 및 모집단위 관련 교과 성취도의 우수성을 평가함 - 과목 수준,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함	교과(목) 학업성적

③ 교과 학업 수행 내용

평가 내용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역
- 교과(목)별 수업 활동에서 나타난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A 등급 평가 사례(공과대학 지원자)

공과대학 지원자 사례
- 모집단위 관련 진로선택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물리학Ⅱ, 화학Ⅱ, 기하 등)하면서 - 기초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등) 및 모집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2등급, 성취도 A 수준이고 -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3) 교과 이수 기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 과 선택과목 유형에 따른 교과이수기준 II 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기준 I 과 기준 II 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모집단위	교과이수기준 I
탐구	전 모집단위 공통	사회 3과목 + 과학 3과목 또는 사회 2과목 + 과학 4과목
생활교양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

구분	교과이수기준 II
수학	일반 4과목 또는 일반 3과목 + 진로 1과목
과학	일반 3과목 + 진로 2과목 또는 일반 2과목 + 진로 3과목
사회	일반 3과목 + 진로 1과목 또는 일반 2과목 + 진로 2과목 *국제계열 교과 포함

2. 2024학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2024학년도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발표된 사항은 2가지이다. 하나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간소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입전형 4년 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올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추정해보면, 2024학년도 대입전형은 2023학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전형별 모집인원 규모,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 요소 반영 방법 등에서 약간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2024학년도 대입전형을 일부나마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데, 변화 내용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제시와 정시모집 수능 과학탐구 응시영역 기준 개편이다.

가. 서울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서울대는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의 연계성을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이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육과정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의 기초 소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하였고, 수능에서도 과학탐구영역 II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모집 단위 학문 분야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수능 과학탐구 응시 방법 개편 내용을 담아 2024학년도 수능 응시영역 기준을 발표하였다.

1)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핵심 권장과목은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며, 권장과목은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다.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 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한다.

☞ 모집단위별 핵심 권장과목 및 권장과목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부			미적, 확통	
	농경제사회학부			미적, 확통	
	자유전공학부			미적, 확통	
자연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미적, 확통, 기하			
	통계학과	미적, 확통, 기하			
	물리학전공	미적, 기하	물II	확통	
	화학부	미적	화II	확통, 기하	
	생명과학부	미적	생II	확통, 기하	화II
	지구환경과학부	미적	물II/화II/지II	확통, 기하	
	천문학전공	미적, 기하	지I	확통	지II, 물II
공과대학	광역	미적, 확통		기하	
	기계공학부	미적, 기하	물II	확통	
	전기정보공학부	미적	물II	확통, 기하	
	조선해양공학과	미적, 기하	물I	확통	
	에너지자원공학과	미적, 기하	물II	확통	
	원자핵공학과	미적	물II		
	건설환경공학부	미적, 기하		확통	

2) 수능 과학탐구 응시 방법 개편

과학탐구 영역 II과목의 필수 응시 기준을 완화하여 2024학년도부터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에서 ‘I+I’ 응시 조합을 허용한다. 다만 지속해서 과학탐구 영역 II과목 응시를 장려하기 위해서 과학탐구 과목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를 부여한다.

수능 과학탐구 과목을 I+II로 응시할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과목으로 응시해야 하는 기준은 지속해서 유지한다. 단, 일부 모집단위는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화학 II 중 1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컴퓨터공학부	미적, 확통			
	산업공학과	미적		확통	
	건축학과			미적	
	재료공학부	미적, 기하		확통	물II, 화II
	항공우주공학과	미적, 기하	물II	확통	지II
	화학생물공학부	미적, 기하	물II		화II 또는 생II
	식물생산과학부		생II	미적, 확통, 기하	화II
농업생명 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II, 생II	미적, 확통, 기하	
	응용생물화학부		화II, 생II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 기하		확통	물II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 기하			물II/화II
생활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		화II, 생II		
	의류학과			확통	화II, 생II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미적, 확통, 기하			
	물리교육과		물II	미적, 확통, 기하	
	화학교육과		화II	미적, 확통, 기하	
	생물교육과		생II	미적, 확통	화II
	지구과학교육과		지I	미적, 확통, 기하	지II
	의예과		생I	미적, 확통, 기하	생II
	약학계열		화II, 생II	미적, 확통	
	수의예과		생II	미적, 확통	
	간호대학				생I, 생II

㉠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화학II 중 1개 과목 이상 이수 지정 모집단위

단과대	모집단위
자연과학대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산림과학 제외한 모든 학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의과대학	의예과

㉡ 수능 과학탐구 과목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

과학탐구 과목 응시조합	I+I	I+II	II+II
조정점수	없음	3점	5점

*** 진로·진학 지원 사이트 목록

연번	구분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주요내용
1	대입 상담 포털	빛고을 꿈트리 진로진학 상담	https://band.us/band/65039191	• 대입 관련 상담 • 진로 진학 상담교사 실시간 답변
2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http://www.adiga.kr	• 대학의 입시정보 종합적으로 제공 • 대학/학과/전형정보, 대입상담
3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쌤』	https://sam.adiga.kr	• 교사대상 입시정보 제공 • 수시/정시 모집요강 및 입시결과 자료
4		전문대학 프로칼리지	http://www.procollege.kr	• 진로/입학/평생교육 정보 • 진학지원(설명회, 온라인 상담)
5	진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	• 대학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 대교협 발간자료 탑재
6		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 대학별 전형계획 및 모집요강 • 발간자료
7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	• 국내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 • 교육여건/학생선발/취업률
8		학교알리미	http://www.schoolinfo.go.kr	• 전국 초중고 학교 정보공시 •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의 공시 자료 제공
9		서울대학교 웹진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합격생 사례 조회
10	진로	교육부 『꿈길』	http://www.ggoomgil.go.kr	• 진로체험처 검색 • 진로체험안내
11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http://www.careernet.re.kr	• 진로/직업/학과 정보 • 진로동영상 및 교육자료
12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http://www.work.go.kr	• 구인/구직/일자리 채용정보 • 학과정보
1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하이파이브』	http://www.hifive.go.kr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사이트 • 취업/진로
14	학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 대학수학능력시험 • 교육평가/국가고시
15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 교수학습 정보 사이트 • 수업/교육정책/창의적 체험활동
16		EBSi 사이트	http://www.ebsi.co.kr	• EBS 인터넷 강의 • 입시정보 제공
17		EBS 온라인 클래스	https://oc.ebssw.kr	• 온라인 수업 지원시스템
18	기타	창의인성 교육넷 『크레존』	http://www.crezone.net	• 창의체험활동 공간 정보 제공 • 지역별/자원별/주제별/대상별 제공
19		큐넷(Q-Net)	http://www.q-net.or.kr	• 종합 자격정보 사이트 •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 시·도 교육청 운영 진로진학정보센터 목록

연번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1	광주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jinhak.gen.go.kr
2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www.jinhak.or.kr
3	부산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dream.pen.go.kr
4	대구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http://jinhak.dge.go.kr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http://jinhak.ice.go.kr
6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www.edurang.net/main.do?s=course
7	울산광역시교육청 진학정보센터	http://jinhak.use.go.kr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입지원센터	http://sjcc.sje.go.kr/
9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jinhak.goedu.kr
10	강원도교육청 진학지원센터	http://jinhak.gwe.go.kr
11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원	http://jinro.gwe.go.kr
12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원	http://jinro.cbe.go.kr
13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http://career.edus.or.kr
14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	http://jinro.jbe.go.kr
15	전라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jne.go.kr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교육정보-진로진학지원센터
16	경상북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jinhak.gbe.kr
17	경상남도교육청 대입정보센터	http://jinhak.gne.go.kr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http://jinro.jje.go.kr